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도기육 의원 외 17명)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기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2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도기육·김창규·배진석·
이흥희·박현국·김위한·
안희영·배영애·정상구·
김희수·홍진규·남진복·
박성만·윤창욱·윤성규·
한창화·오세혁·박권현
의원(18명)

찬 성 자 : - 명

1. 개정이유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일까지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이 필요함.

- 이에 경상북도 지방분권 축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축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분권 축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 등 경상북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 축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지방분권 축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지방분권 축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지방분권협회의의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바. 경상북도 지방분권축진센터 설치와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명부 붙임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주민참여의 실현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제1항의 지방분권 촉진사업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분권 촉진사업)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과 내실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카데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조사·연구·교육활동
2.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홍보활동
3.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활동
4.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기관·단체 육성·지원
5.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분권 촉진사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하여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개선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3.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제6조의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방분권촉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 사업
2.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교육사업
3.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사업
4. 지방분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의 재계약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 운영규정은 시행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로 본다.

제3조(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연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검 토 의 건 서

□ 조례명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혁신법무 담당관	제6조(지방분권협회의의 설치)①생략 ②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개정안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개정문 수정.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등에 대하여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둘수 있음. 본안은 전부개정으로써 당초 지방분권협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보호코자 한다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6조제4항은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당초 협의회가 연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법규 시행당시 임기기준을 규정해 주거나 연임여부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7. 9.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 구체적·객관	해당없음.
			㉡ 추상적·주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검 토 의 견 서

□ 조례명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정책기획관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 및 제도의 한계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 가치의 실현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촉진·지원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하며,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3. 미첨부 사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 중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행정6급 권정심 880-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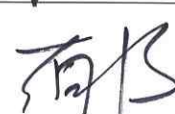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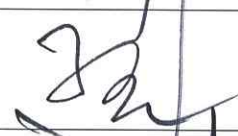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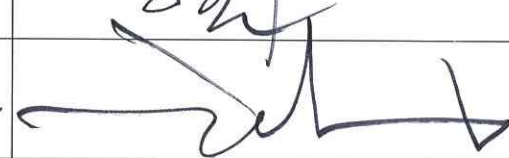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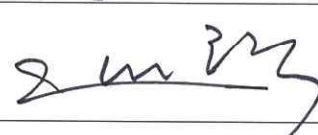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노 기 욱	노 기 욱	
김 창후	김 창후	
배 진석		
이 흥희	이 흥희	
박 현국		
김 위 환	김 위 환	
한 리영	한 리영	
배 영애		
김 상주	김 상주	
김 현우	김 현우	
홍 진재	홍 진재	
노기 욱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백성만		
유창욱		
문배기		
장강하		
김시현		
이재현	